



농림축산식품분야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림축산식품분야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ONTENTS

농림축산식품분야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업인은
소득·재해걱정을
덜게 됩니다.



01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10
02.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11
0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12
04.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13
05.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14
06.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15
07.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16
08. 밀 비축제 시행	17
09.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18
10.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19
11.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20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 됩니다.



0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1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25
1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6
14.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7
1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28
16.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29
17.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30
18.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31
19.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32
20.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33
21.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34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03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2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41
23.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42
24.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43
25.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44
2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45
27.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46
28. 비료관리 강화	47
29.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48
30.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49
31.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50
32.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51
33.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52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0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34.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57
35.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58
3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59
37.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60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05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38.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65
39. 양곡관리사 도입	66
40.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67
4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68

CONTENTS

농림축산식품분야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수요자별)

01 신규 농업인

❖ 청년·귀농귀촌

34.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57
35.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58
38.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65
11.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20
1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28

02 품목 농업인

❖ 쌀

07.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16
08. 밀 비축제 시행	17
39. 양곡관리사 도입	66

❖ 원예

1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6
------------------	----

❖ 축산

10.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19
14.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7
2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41
23.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42
24.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43
25.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44

03 농업인 일반

❖ 경영안정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10
02.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11

0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12
04.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13
05.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14

❖ 농지

06.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15
3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59

❖ 기타

1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25
40.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67
4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68

04 식품·외식 기업 등

09.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18
16.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29
17.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30
18.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31
19.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32
21.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34
27.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46
28. 비료관리 강화	47
2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45
29.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48
30.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49
31.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50

05 국민

20.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33
32.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51
33.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52
37.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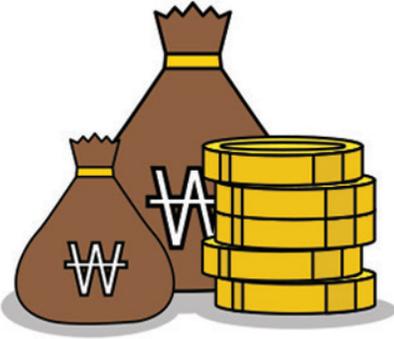
농업인은
소득·재해걱정을
덜게 됩니다.



01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 
- 
- | | |
|--------------------------------------|----|
|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10 |
| 02.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 11 |
| 0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 12 |
| 04.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13 |
| 05.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14 |
| 06.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15 |
| 07.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 16 |
| 08. 밀 비축제 시행 | 17 |
| 09.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 18 |
| 10.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19 |
| 11.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 20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되어('18: 91만원 → '19: 97)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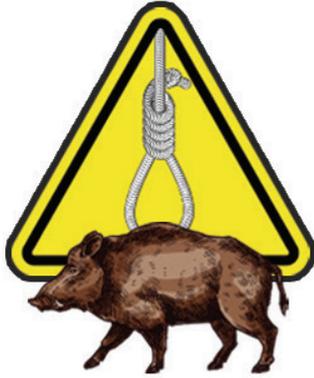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2019년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타작물 재배시 휴경 도입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19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밀 비축제 시행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0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4)

-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되어('18: 91만원 → '19: 97)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연금보험료 지원액의 단계적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추진배경**: 농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 ② (지원내용)
 - 기준소득금액(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 기준소득금액(97만원) 초과인 경우 월 43,650원(정액)

❖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 농업인복지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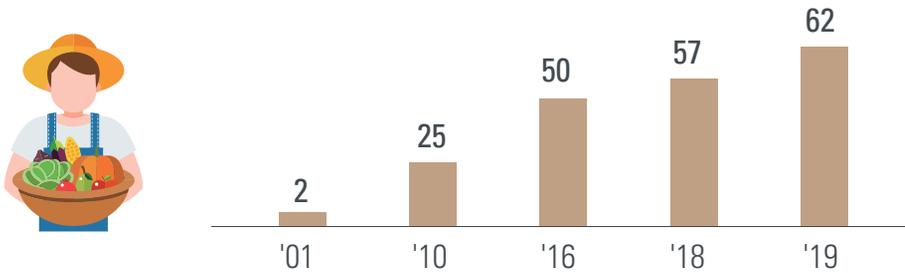
02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28)

-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배추, 무, 당근, 호박, 파)**을 신규 도입할 계획입니다.

* 품목수 : ('01) 2개 → ('10) 25 → ('16) 50 → ('18) 57 → ('19p) 62



- 또한 보험료를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

- ❖ **추진배경**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 안정망 확충
- ❖ **주요내용**
 - ① (농작물재해보험) 노지채소 중심으로 보험 대상품목 확대(57품목 → 62품목)
 - 신규 5품목 :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 ❖ **시행일** : 품목별 가입시기 상이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업분야](#) > [농작물재해보험](#)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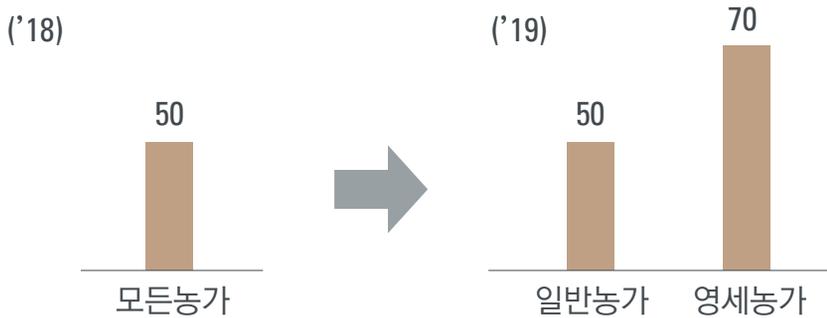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2)

● 2019년부터 영세농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18) 모든농가 50% → ('19)영세농가 70%, 일반농가 50%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농작업 중 안전사고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경영 안정망 확충

❖ 주요내용

- ① (농업인안전보험) 영세농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
- 지원비율 : ('18) 모든농가 50% → ('19) 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업분야 > 농업인안전보험

04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 044-201-1794)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 ❖ **추진배경**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 도모
-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협조직
 - ② (지원내용) 포획트랩 설치비용 지원(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
- ❖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05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40)

-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면세유로 추가하여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됩니다.**
 - ◎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예초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 **추진배경** :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는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 **주요내용**
 - ①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 추가
 - * 현재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는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인정
-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06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36)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합니다.**
 -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①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추가(안 제23조 제1항)**
-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
- ②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안 제24조의2)**
-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③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신설, `19.下)**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법 개정안 공포

07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3)

● '19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합니다.

● 또한, 품목간 조정을 통하여 조사료('18 : 400만원/ha → '19 : 430), 두류('18 : 280만원/ha → '19 : 325)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습니다.

구분	조사료	일반·꽃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단가(만원/ha)	400('18) → 430('19)	340 → 340	280 → 325	- → 280	340
목표면적(천ha)	15('18) → 10('19)	20 → 15	15 → 20	- → 10	50 → 55

※ 사업대상 제외 품목 : 무, 배추, 고추, 대파('18년과 동일)

● 아울러 '19년부터는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추진배경 : 쌀 수급안정 및 쌀 이외 조사료,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① (목표) '19년 벼 재배면적 55,000ha를 감축하여 수급균형 도모
- ② (대상) '19년 신규 타작물 전환 신청 농지(농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농가)
- ③ (민간협조) 지역별 쌀전업농은 벼 재배농지의 10% 타작물 재배 참여,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 참여 운동 전개

❖ 시행일 : 2019년 1월 22일 * 사업신청 : 1.22.~6.28. / 이행점검 : 7.1.~10.31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08

밀 비축제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5)

-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합니다.
 - 밀 수급안정을 위해 '17년산 밀을 우선 매입('19.2월 잠정)하고, '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입니다.
 -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하여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수매된 밀은 군·학교급식, 수입밀 가공업체 등에 할인 공급하여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해나겠습니다.

밀 비축제 시행

- ❖ 추진배경 : 제2의 주식인 밀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급안정 제도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① (물량) 국산밀 1만톤 수준
 - ② (대상) 생산자단체(지역농협·농업회사법인·영농법인 등)
 - ③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 예정
- ❖ 시행일 : 2019년 2월, 7월

09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0)

-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중소 식품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국산 원료 농산물 구입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국산 농축산물 신용거래 지원
- ❖ **주요내용**
 - ①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비 지원
- ❖ **시행일** : 2019년 1월



▶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 지원사업안내

10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19.7월)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 추진배경 :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사육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 및 정당한 보상 도모
- ❖ 주요내용
 - ①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 시행일 : 2019.7월(잠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11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 농업정책국 농지과 (☎ 044-201-1733)

●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확대 : ('18) 3,140억원 → ('19) 3,612 (↑ 472억원)

** 농지매입비축 계획 면적*단가 : ('18) 1,570ha*2억원 → ('19) 1,720*2.1

● 또한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18.11월)하여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존) 농지 단편정보 제공, 지사 방문 사업신청 →

(개편) 농지 종합정보(가격·항공지도·재배작목·토양정보) 제공, 인터넷·모바일 사업신청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 추진배경 : 농지 매매 및 임대차 활성화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 강화를 위한 매입비축사업 확대

-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확대 : ('18) 3,140억원 → ('19) 3,612 (↑ 472억원)

- 농지매입비축 계획 면적/ha당 단가 : ('18) 1,570ha/ 2억원 → ('19) 1,720/2.1

② 전국 단위의 농지정보 제공,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농지은행포털 개편, '18.11)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분야별정책 > 농지은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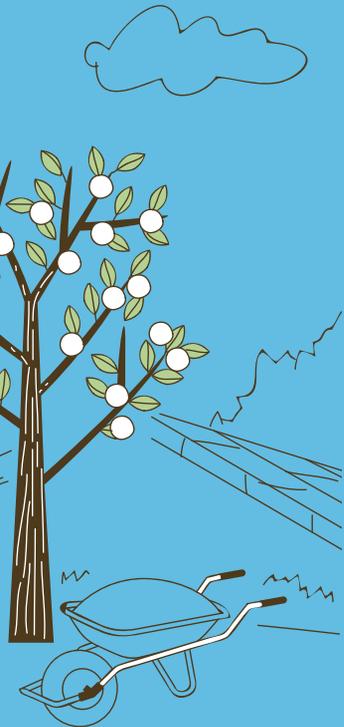


농식품 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마련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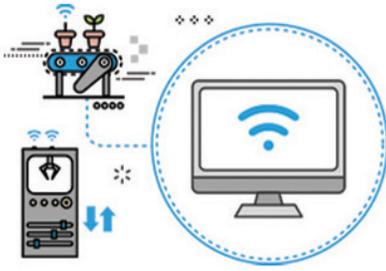


02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1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25
1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6
14.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7
1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28
16.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29
17.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30
18.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31
19.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32
20.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33
21.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34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 · 창업 징검다리 · 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소 조성합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정책 수혜 가능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 '19년 7월 이후부터 창업자금, 교육 · 컨설팅 등

12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 특별위원회 발족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22)

- **농어업 · 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됩니다.**
 - ◎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 · 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 ◎ 농어업 ·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개요

- ❖ **추진배경** : 시장개방, 농촌 과소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에 대한 새로운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 ❖ **주요내용** :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 ① (기능)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자문 추진
 - ② (구성) 위원장(대통령 위촉) 포함 총 30인의 위원 구성
- ❖ **시행일** : 2019년 4월 25일

1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044-201-2423)

-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가 2개소 조성합니다.**
 -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하고,
 -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공공·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실증·테스트를 지원하여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개요

- ❖ 추진배경 : 규모화·집적화, 청년 창업, 기술혁신, 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조성
- ❖ 주요내용
 - ① 수요자 중심 생산체계 : 고품질·안전·균질한 농산물 안정적 공급
 - ② 농업·농촌에 청년유입 : 청년의 안정적 창업·정착
 - ③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 : 기술혁신, 신제품 발굴로 시장 창출·수출
- ❖ 추진현황 : ('18)2개소 선정(경북, 전북) → ('19) 추가 2개소 선정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14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2)

-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 ◎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걸쳐 62.5억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 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 **추진배경** : 축산의 사회적 문제(환경·질병·무허가)를 해결하고 미래 지향적 축산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 ❖ **주요내용**
 - ① 토목·도로·전기 등 기반조성비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② 관제·교육센터 지원(국고 50%, 지방비 5%)
- ❖ **시행일** : 2019년 신규

1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40)

●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됩니다.**

◎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규정되며, '19.6월까지 마련될 예정

** 농지·시설 등 영농창업(3억원 한도) 및 주택구입(75백만원 한도) 자금(연리 2%, 5년거치 10년상환)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에 대한 귀농 정책 지원

❖ **추진배경**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에 대한 영농 창업 지원

❖ **주요내용**

① '19.7월 이후부터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 지원 정책 수혜 가능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16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044-201-1537)

- 2019년 하반기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되어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 그동안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의 네 가지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

- ❖ **추진배경** : 상법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신규 도입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
- ❖ **주요내용**
 - ①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②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가능
-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17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4)

- **우수 전통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여건을 개선하여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명인들의 기능과 그 제품에 대한 전시체험 등 홍보 위주의 지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여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원사업

- ❖ **추진배경** : 차세대 전수자 발굴 및 양성 지원을 통해 우수 식품명인이 보유한 전통식품 기능이 지속적으로 전승, 발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 **주요내용**
 - ① **사업대상**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전수자
 - ② **지원성격** : 기능전수 활동 장려금
 - ③ **지원규모** : 3억원/전수교육 등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시행일** : 2019년 1월

18

식품 기술거래 · 이전 사업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4)

- 2019년부터 산 · 학 · 연간 식품 기술거래 ·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 · 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 · 이전 전(全)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식품 기술거래 · 이전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식품 분야 기술거래 촉진 및 거래시장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사업대상)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식품분야* 특허를 식음료제조업 및 외식업** 기업으로 이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식품분야 과학기술
** 한국표준사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근거
- ② (주요사업) 기술거래 · 이전 과정 지원, 식품 기술거래 · 이전 정보망 구축, 기술 이전 후 사후 모니터링, 기술이전 후 컨설팅 지원 등

❖ 시행일 : 2019년 3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사업시행지침서 > 기술거래 · 이전 사업

19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 044-201-2121)

-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식품산업의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 ◎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 ◎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 예정입니다.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식품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
- ❖ **주요내용**
 - ①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 향후 새롭게 개발·보급될 혁신적 식품이지만 국내 개발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해 원천기술 수준을 제고('19년 2,500백만원)
 - * 혁신식품 :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화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시장이 유망한 분야임에도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산업화가 미흡한 식품
 - ② **천연첨가물 산업화** :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소비자 웰빙 수요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화학첨가물 대체 천연첨가물 개발('19년 2,969백만원)
- ❖ **시행일** : 2019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사업안내서비스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20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 044-201-1877)

- **방조제 공사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 ◎ 그동안은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 대해 단년생 작물 경작 및 농업기술 개발 시험·연구 목적의 작목 경작만 허용해 왔으나,
- ◎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 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도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식품 기술거래 · 이전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간척지 활용 다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① (사용범위 확대) 시험·연구용 작목경작 →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 ② (사용 가능지역) 미준공 간척지 4개지구(화옹, 시화, 영산강, 새만금)

*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공사완료 후 드러난 간척지에 대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기부담으로 임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시행일** : 2018년 8월 22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규제개혁 > 규제혁신홍보자료 > 부처간행물 > 농식품규제개혁성과 사례집

21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044-201-1857)

-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 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km, 그 외 지역은 5km)이 완화됩니다.**
- 저수지 상류는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폐수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물환경보전법 제2조)
- 앞으로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저수지 수질은 보호하면서 기업 입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 ❖ **추진배경** :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 및 농촌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저수지 상류에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 설립 가능(현재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만 설립 가능)
- ❖ **시행일** : 2019년 4월 25일





소비자의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03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2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40
23.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41
24.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42
25.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43
2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44
27.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45
28. 비료관리 강화	46
29.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47
30.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48
31.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49
32.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50
33.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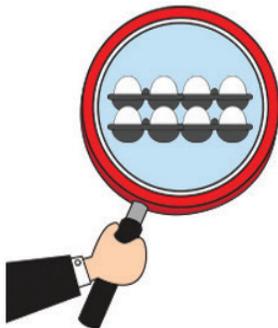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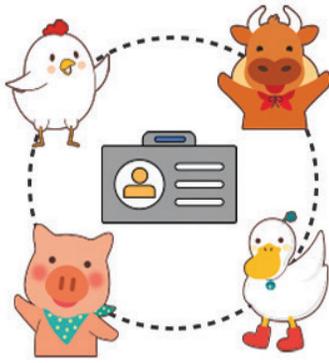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됩니다.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2019년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됩니다.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됩니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2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5)

-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실시 후 위험도를 고려하여 3Km까지 확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개정('18.11.23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입니다.

-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3Km 예방적 살처분

❖ 추진배경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확대 등 강력한 방역조치 필요

❖ 주요내용

- ①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
 - 다만, 발생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

❖ 시행일 : 2018년 11월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23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044-201-2326)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 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 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여야 합니다.
 -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어야 함

축산법 시행령(18.7.10 개정) 중 관련내용

- ◆ 추진배경 :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
- ◆ 주요내용
 - ①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
 - ②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
 - ③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 ◆ 시행일 : 기존농가 2019년 9월 1일 적용(신규농가는 '18.9.1. 기시행)

참고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축산법 시행령

24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 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정책과 (☎ 043-719-3211)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39)

-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 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됩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합니다.
 - * 알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의 영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달걀
-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GP유통 의무가 제외됩니다.
 - ①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 ②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 계란의 GP유통 의무화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 ❖ 추진배경 : 계란의 위생·안전관리체계 강화
- ❖ 주요내용
 - ①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통한 선별·포장 유통이 의무화
- ❖ 시행일 : 2019년 4월 25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5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 2019년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 돼지(국내산 · 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합니다.
-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되고,
- 현재 대규모 식품접객업자(700㎡ 이상),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 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축산물이력법 일부개정('18.12월)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가금이력제 도입으로 축산물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추적·회수를 효율화 하고 투명한 유통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심 강화

* (이력제 구축) 국내산 소('08) → 수입 쇠고기('10) → 국내산 돼지('14) → 수입 돼지고기('18.12)

❖ 주요내용

- ① 소·돼지만 이력관리 대상 축종이 소·돼지에서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②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돼지·닭·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신설
- ③ 대규모 식품접객업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의무 대상이 수입산 이력대상 축산물에서 국내산 이력대상축산물까지 확대

❖ **시행일** : 2019년 12월말(잠정)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9)

-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18.12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 주요내용
 -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규정 신설
 - ②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
- ❖ 시행일 : 2019년 7월

참고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사료관리법

27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5)

-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ml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농약 제조업자름·수입업자름·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름·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름·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 아울러, 영세한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하였지만, '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 **추진배경** : '19년 PLS 전면시행에 대비한 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록관리 체계 개선
- ❖ **주요내용**
 - ①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ml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
 - ②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년부터 구축·운영
-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참고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농약관리법('18.12.31 공포 예정)

28

비료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2)

-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비료업체가 산물 형태로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비료화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적재·매립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료 관리강화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 ❖ **추진배경** : 식물폐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품질강화, 환경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근거 마련
- ❖ **주요내용**
 - ① 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는 경우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사용일자, 사용물량 등 사전신고 의무화
 - ② 비료업체가 산물형태로 비료 판매·유통·공급시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사용자에게 판매·유통·공급 중지
- ❖ **시행일** : 2019년 2월 1일

29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044-201-2436~7)

●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됩니다.

- 첫째, '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됨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 둘째,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됩니다.
- 셋째,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1.12.31.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 외에 유기양봉제품 인증제가 시작되고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등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2019년 시행예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 추진배경 : 「식품안전 종합대책」 후속조치
- ❖ 주요내용
 - ①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 ②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취소”
 - ③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인증기관명” 제외)
 - ④ 유기양봉제품 인증제 시작,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등
- ❖ 시행일 : ①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20.1.1, 사전교육은 '19.7.1.부터)
② 친환경인증 축산물 처분기준 강화('19.4.1.)
③ 친환경 인증표시 항목 간소화('19.7.1.)
④ 유기양봉제품 인증제('19.1.1.),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등('19.7.1.)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30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9)

-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택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택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규제병해충 검출건수('17년 기준) : 검역증 첨부(394건, 1.2%) < 검역증 미첨부(730건, 2.3%)
-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재식용 식물의 수송방법, 수입량과 무관하게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추진배경 : 외래병해충의 유입 차단

❖ 주요내용

- ① 휴대·우편·택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현행)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첨부
 - (개선) 수량에 관계없이 첨부
 - * 단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식물방역법

31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9)

-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 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 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2019년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 **추진배경** : 외래병해충에 의한 자연환경 및 국민건강 등의 피해 예방
- ❖ **주요내용**
 - (현행) 식물의 재배자에 한하여 병해충 피해 식물 또는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개선) 식물의 재배자, 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식물검역 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참고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식물방역법

32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7)

-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됩니다.**
-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허가·등록이 불가능 하였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18.12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보호정신 함양
- ❖ **주요내용**
 - ①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영업허가·등록 제한(제33조제3항제4호 단서신설)
- ❖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33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4)

●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 도사견·아메리칸 핏볼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볼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

○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 시행예정 동물보호법

❖ **추진배경** : 맹견 관련 상해·사망사고 경감,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 완화

❖ **주요내용**

- ① 맹견 안전관리 사항 신설(정기 교육 의무 이수, 출입불가 장소 신설 등),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칙 규정 신설

❖ **시행일** : 2019년 3월 21일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농촌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04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 34.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55
- 35.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56
- 3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57
- 37.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58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농촌유희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하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 일시사용허가대상에 포함

34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6)

-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조성 예정입니다.
 -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매력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주거·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 **주요내용**
 - ① 귀농귀촌 신혼부부 1자녀 이상 양육가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지원(4곳, 120호)
 - ② 공동 육아나눔 활동 공간 조성(지구당 1개동, 4동)
 - ③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지구단 1개동, 4동)
- ❖ **시행일** : 2019년 2월(잠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정책홍보 > 농촌분야

35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044-201-1582)

-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 공간 제공

- ❖ 추진배경 : 농촌의 기능유지 및 활력제고를 위해 청년 등 외부 인력의 유입·정착 지원 필요
- ❖ 주요내용
 - (지원내용) 농촌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창업 공간 제공
 - (지원대상) 농촌지역 창업 희망자
- ❖ 시행일 : 2019년 7월(잠정)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3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7)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18.12월) 되었으며,
-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및 농가 소득제고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①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의 일시사용기간 확대(8년 → 20년)

❖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23건 국회 본회의 통과

37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 044-201-2377)

-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 등록이 제한됩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18.12월)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동물장묘업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간 갈등완화 및 성숙한 반려동물장례 문화 확산
- ❖ 주요내용
 - ①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3호제5호 신설)
- ❖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 동물보호법





농식품분야 청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05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 | | |
|------------------------|----|
| 38.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63 |
| 39. 양곡관리사 도입 | 64 |
| 40.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 65 |
| 4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66 |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합니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을 신설

38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8)

- '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 의무 부여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개요

- ❖ 추진배경 : 농업부문 청년층(대학졸업생) 농업 및 농촌 유입 촉진
-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는 2학년이상)
 - ① 지원조건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 시행일 : 2019년 2학기

39

양곡관리사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044-201-1820)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합니다.
-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하여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를 통해 **정부양곡의 보관·가공 등을 관리토록 하여 관리를 효율화**하고 품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양곡관리사 도입 개요

- ❖ 추진배경 : 쌀 산업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 주요내용
 - ①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 도입
 - 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③ 양곡관리사를 통한 권역별 정부양곡 관리체계 구축
- ❖ 시행일 : 2019년 12월(잠정)

40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

●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최근 반려동물 사육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노령견 등을 간호할 인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 /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동물간호사제도를 도입

●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하여 단순보조업무(비진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인증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입니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동물간호 전문직종 신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동물복지 향상

❖ 주요내용

①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을 신설

❖ 추진현황 : 2019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 예정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국회 제출('17.1.3)

41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3)

●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19.7월)됩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됩니다.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는 '21년 1월 1일 이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이 3년('18~'20년) 동안 실시되며, 향후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의무화가 정착되면 방역·위생관리의 효율화·전문화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8) 40개소(7.5억원) → ('19) 100개소(18억원)

가축방역위생관리업종 도입 개요

❖ 추진배경: 축산농가의 해충 전문방제업(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과 활용 확대를 통해 방역·위생관리의 효율화·전문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①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19년)으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록(신고)
- ② 가축방역위생관리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화 시행('21년)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21.1.1.부터 시행)
 -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시행(7월 예정) 후 즉시 적용)
- ③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사업 시범실시('18~'20년) 및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의무화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

❖ 시행일 : 2019년 7월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농림축산식품분야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발행일** : 2019년 1월
-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주 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 **홈페이지** : www.mafra.go.kr